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17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9가합39153(본소) 채무부존재확인
2010가합9653 (반소) 손해배상(자)

원고(반소피고) ○○ 주식회사
서울 중구
대표이사 지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

피고(반소원고) 박○○
서울 동대문구
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선태

변 론 종 결 2010. 8. 13.

판 결 선 고 2010. 9. 10.

주 문

1.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,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에 대한 별지 표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8. 2. 16.부터 2010. 9. 1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 40%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[본소] :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, 별지 표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 한다)의 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 한다)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[반소] : 원고는 피고에게 69,358,681원 및 이에 대한 2008. 2. 16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.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인정사실

(1) 원고는 소외 강○○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(00호 그레이스밴)에 관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 내용과 같이 위 차량을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, 피고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00소재 ○○ 주유소 화랑점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.

(2) 소외 최○○은 2008. 2. 16. 09:1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 주유기 주변에 서 있던 피고의 수신호에 따라 위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급발진하는 바람에 차량 앞 횡단 부분으로 주유기를 들이 받고 주유기 옆의 쇠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(이하, 이 사건 사고라 한다). 이 사건 사고 결과 위 주유기의 프론트 커버와 고속호스 등이 파손되어 누유되었고 쇠기둥이 우그러들 정도로 파손되었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1호증, 갑2호증의 1, 2,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, 갑3호증의 1, 갑6호증의 각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]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주유기 앞에 서있던 피고는 위 사고 차량에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 차량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우 놀란 관계로 그 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바, 원고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일응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가. 일실수입

피고는 2008. 2. 16.부터 2011. 12. 14.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

실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의한 일실수입 약 32,382,321원 상당을 구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

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'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'가 발병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, 동대문구보건소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함께 1,531,5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향후 치료비로서 5,444,850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, 을3호증의 1 내지 5, 을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(갑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신경정신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(신체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개인적 이유로 신체감정을 받지 않고 있다)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위자료

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우 놀랐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는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금원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, 피고의 연령, 직업, 피해 정도, 원고가 일부 지급한 가지급금 액수, 사고발생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, 그 금액은 5,0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

일인 2008. 2. 16.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. 9. 1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,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,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황윤구 _____

 판사 정원석 _____

 판사 안지연 _____

[보험사고]

1. 사고일시 : 2008. 2. 16. 09:10경
2. 사고장소 : 서울 성북구 ○○ 주유소 화랑점
3. 사고내용 : 소외 최○○이 호 그레이스밴 승합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사고장소에 진입 중 위 승합차량 운전석 앞 휠다 부분으로 주유기와 주유소 기둥에 충돌한 사고

[자동차보험계약]

1. 피보험자 : 강○○
2. 차량번호 :
3. 보험기간 : 2007. 7. 11. - 2008. 7. 11.
4. 보험종목 : 대인 1·2, 대물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차상해
5. 계약번호 : 10723141890001
6. 특별약관 : 만 35세 이상 한정. 끝.